

# 한국외국어대학교 총학생회 공간운영세칙

[총학생회 세칙 제6호] [제정 2014.11.24, 공포 2014.11.27]

제 정 2014 · 11 · 24 <제 정>

<b>제1장 총칙</b> .....	1
<b>제2장 자치공간</b>	
제1절 배정공간 .....	1
제2절 대여공간 .....	2
제3절 야외공간 .....	3
<b>제3장 공간운영위원회</b>	
제1절 공간운영위원회 .....	4
제2절 공간협의회 .....	5
<b>제4장 공간운영규칙</b> .....	6
<b>부 칙</b> .....	6

## 제1장 총칙

### 제1조(목적)

본 세칙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내 모든 공간을 배정·조정·유지·관리하는데 있어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공간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의 제고 및 공간 사용의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2조(정의)

- ① ‘공간’ 이라 함은 본회 회원들이 자치활동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학내 모든 건물의 내부와 외부를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된다.
  1. ‘배정공간’ 이라 함은 각 단위가 학교로부터 정당한 사유로 기존에 배정받았던 공간이다.
  2. ‘대여공간’ 이라 함은 각 단위가 공간운영위원회에 대여신청하여 사용하는 공간으로 대운동장·오바마홀·무용실이 이에 해당된다.
  3. ‘야외공간’ 이라 함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내 실내 공간을 제외한 공간으로 국제학사 앞·나무계단·잔디광장·인문과학관 앞·붉은광장·사이버관 나무계단·본관중앙광장·교수학습개발원 앞 잔디밭·사회과학관 옆 정자가 이에 해당된다.
- ② ‘공간배정’ 이라 함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 각 단위에 학생자치활동을 목적으로 공간의 사용을 허가하여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.
- ③ ‘공간조정’ 이라 함은 당초 배정된 공간이 사용주체 및 공간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또는 공간 내부의 상당부분이 시설공사를 통하여 구획 및 형태(마감재 변경)등이 변경됨을 말한다.

## 제2장 자치공간

### 제1절 배정공간

#### 제3조(배정공간관리 원칙)

- ① 총학생회, 단과대학·독립학부 및 학부·과, 동아리연합회 등 모든 단위는 배정받은 공간을 임의로 조정·변경·교환할 수 없으며 필요할 경우 본 세칙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.
- ② 총학생회, 단과대학·독립학부 및 학부·과, 동아리연합회 등 모든 단위는 배정받은 공간을 그 목적성에 맞추어 청결하게 사용할 의무를 진다.
- ③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동은 제8조(위반자에 대한 조치)를 따른다.

#### 제4조(배정공간의 조정 절차)

- ① 공간 조정을 필요로 하는 단위는 「사무처리세칙」에서 정한 양식을 갖추어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.
- ② 중앙운영위원회는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사안에 따라 필요성·타당성·적정성 등을 심의한 후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제2항이 부결되었을 경우 해당 단위는 2회에 한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중앙운영위원회는 이의제기를 받은 그 즉시 재논의를 하여야 한다.

④ 건물의 신·증축으로 인하여 새롭게 공간이 생길 경우 본회는 자치공간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배정·조정한다.

#### **제5조(배정공간의 유지 및 관리)**

- ① 배정공간의 유지 및 관리는 해당 배정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단위의 모든 구성원이 한다.
- ② 배정공간책임자는 공간 사용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거나 시설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공간운영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.

#### **제6조(배정공간책임자)**

- ① 배정공간책임자는 해당 공간을 이용하는 단위의 대표자로 한다.
- ② 배정공간을 이용하는 단위의 대표자가 궐위될 경우 해당 단위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1인이 배정공간책임자가 된다.

#### **제7조(행위제한)**

배정공간사용 단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.

1. 공간의 명칭 및 용도의 무단 변경
2. 공간의 무단 분할·합병 및 이전 등
3. 위험물의 제작·사용 및 보관
4. 시설물 구조에 무리를 가하는 진동·충격 등의 실험실습 및 행위
5. 기준 적재하중 이상의 물품의 실내반입 및 적재
6. 실내 공간에서의 흡연, 지나친 음주, 소음발생 및 기타 문란한 행위
7. 시설물 파손
8. 기타 공간사용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행위

#### **제8조(위반자에 대한 조치)**

- ① 제3조(배정공간관리 원칙) 제1항 및 제2항, 제7조(행위제한)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공간운영위원회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.
- ② 시정명령을 받은 단위는 시정사항을 그 즉시 시정하고 총학생회 게시판에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과문을 게재하여야 한다.
- ③ 해당 연도 내에 2회 이상의 시정명령을 받았을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공간을 회수할 수 있다.
- ④ 제3항에 의하여 특정 공간의 회수가 결정될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는 이를 즉시 해당 공간에 공고하여야 하며 해당 공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.
  1. 회수공간정보(호수, 공간명 등)
  2. 공간회수사유
  3. 공간회수일자
  4. 공간회수기간(일시적 또는 영구적)

## **제2절 대여공간**

#### **제9조(대여 신청)**

대여공간은 사용하고자 하는 단위가 「사무처리세칙」에서 정한 양식을 갖추어 공간운영위원회에 대여를 신청한 후 배정받아 사용한다.

### 제10조(대여공간관리 원칙)

- ① 총학생회, 단과대학·독립학부 및 학부·과, 동아리연합회 등 모든 단위는 대여한 공간을 임의로 조정·변경·교환할 수 없으며 필요할 경우 본 세칙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.
- ② 총학생회, 단과대학·독립학부 및 학부·과, 동아리연합회 등 모든 단위는 대여한 공간을 그 목적성에 맞추어 청결하게 사용할 의무를 진다.
- ③ 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14조(위반자에 대한 조치)에 의하여 징계한다.

### 제11조(공간대여의 절차)

- ① 대여공간을 대여하고자 하는 단위는 「사무처리세칙」에서 정한 양식을 갖추어 공간운영위원회가 정한 기한까지 공간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.
- ② 공간운영위원회는 의뢰받은 사항에 맞게 대여공간을 각 단위에 배정한다. 단, 신청이 중복되는 경우 중복신청을 한 각 단위의 담당자들과 협의회를 진행하여 결정한다.

### 제12조(대여공간의 유지 및 관리)

- ① 대여공간의 유지 및 관리는 공간운영위원회가 한다.
- ② 공간대여자는 공간 사용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거나 시설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공간운영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.

### 제13조(이용수칙)

대여공간사용 단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준수하여야한다.

1. 수업 및 교육 분위기를 해치지 않을 것
2. 이용시간을 엄수하며 관리자의 지시에 따를 것
3. 각 공간에 적합한 해당 복장을 갖추어 갈 것
4.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할 것
5. 공간 내에서 문란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
6. 공간 이용 후 정리정돈과 청결을 항상 유지할 것
7. 고성방가 등 쾌적한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
8. 기타 공간사용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
9. 기타 대여공간 개별 이용수칙

### 제14조(위반자에 대한 조치)

- ① 제10조(대여공간관리 원칙) 제1항 및 제2항, 제13조(이용수칙)에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공간운영위원회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.
- ② 시정명령을 받은 단위는 시정사항을 그 즉시 시정하고 총학생회 게시판에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과문을 게재하여야 한다.
- ③ 해당 연도 내에 2회 이상의 시정명령을 받았을 경우 해당 연도에 한하여 대여자격을 제한 한다.

## 제3절 야외공간

### 제15조(야외공간관리 원칙)

본회 모든 회원은 야외공간을 그 목적성에 맞추어 청결하게 사용할 의무를 진다.

### 제16조(야외공간의 대여)

- ① 야외공간을 행사·사업·홍보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단위 또는 정회원은 「사무처리세칙」에서 정한 양식을 갖추어 사용하고자 하는 희망일 7일 이전에 공간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.
- ② 공간운영위원회는 야외공간 대여 요청이 있을 경우 선착순으로 그 공간을 배정한다.

**제17조(이용수칙)**

야외공간 이용 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.

- 1. 지저분한 공간사용
- 2. 위험물의 제작·사용 및 보관
- 3. 야외공간에 무리를 가하는 진동·충격 등의 실험실습 및 행위
- 4. 흡연, 지나친 음주, 소음발생 및 기타 문란한 행위
- 5. 시설물 파손
- 6. 기타 공간사용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행위

**제18조(위반자에 대한 조치)**

- ① 본 세칙 제17조(이용수칙)에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공간운영위원회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.
- ② 시정명령을 받은 단위 또는 정회원은 시정사항을 그 즉시 시정하고 총학생회 게시판에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과문을 게재하여야 한다.
- ③ 해당 연도 내에 2회 이상의 시정명령을 받았을 경우 해당 연도에 한하여 대여자격을 제한 한다.

**제3장 공간운영위원회**

**제1절 공간운영위원회**

**제19조(지위)**

본회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총학생회 특별기구의 지위를 갖는다.

**제20조(목적)**

공간운영위원회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학부과정 구성원들의 자치공간 이용을 보장하고 원활한 사용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1조(회원)**

본회 회원은 모든 정회원으로 한다.

**제22조(구성)**

- ① 운영위원은 6인으로 하며 본회 정회원 중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동일 단과대학·독립학부 또는 동일 동아리 소속의 운영위원이 3인 이상일 수 없다.
-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 6인 중 내부 선출을 통하여 선발된 자로 한다.

**제23조(업무)**

- ① 본회 회원을 위하여 모든 자치공간을 조정 및 관리한다.
- ② 공간운영위원회는 대여공간·야외공간에 대하여 회원들에게 대여신청을 받고 신청단위에 배정한다.
- ③ 본회 회원의 원활한 자치공간 사용을 위하여 본 세칙에 따라 자치공간 사용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관리 및 집행한다.
- ④ 공간운영위원회는 매달 공간운영실태조사를 실시한다.

**제24조(소집)**

- ① 공간운영위원회는 매주 정기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.
- ② 공간운영위원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의장이 회의 24시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.

**제25조(개의 및 의결)**

- ① 공간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.
- ② 공간운영위원회는 출석 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.

**제26조(권한)**

- ① 공간운영위원회는 대여공간·야외공간 사용 시간을 심의·의결하고 이를 회원에게 배분한다.
- ② 공간운영위원회는 공간운영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자치공간 관리 전반에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심의한다.
- ③ 공간운영위원회는 제7조(행위제한), 제13조(이용수칙), 제17조(이용수칙)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.

**제27조(공간운영실태조사)**

- ① 공간운영위원회는 자치공간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매달 정기적으로 공간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한다.
- ② 공간운영위원회는 매달 실시한 공간운영실태조사 보고서를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.
- ③ 그 밖의 공간운영실태조사에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「공간운영규칙」에서 정한다.

**제2절 공간협의회**

**제28조(목적)**

대여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단위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대여공간 배정에 있어서 투명성·공정성·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9조(소집)**

- ① 공간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기한까지 제11조(공간대여의 절차) 제1항의 제출서류를 제출한 단위 중 같은 시간, 같은 대여공간에 중복된 단위가 있을 경우 해당 담당자를 구두 및 서면으로 소집한다.
- ② 공간협의회는 중복되지 않은 단위의 공간 배정이 모두 끝난 후 위원장이 소집한다.

**제30조(개의 및 의결)**

- ① 공간협의회는 신청한 단위 중 같은 시간, 같은 대여공간에 중복된 단위가 있을 경우 해

당 담당자들과 공간운영위원장단의 출석으로 개의한다.

② 공간협의회는 해당 담당자들의 충분한 협상과 논의를 통하여 공간협의회 구성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.

## 제4장 공간운영규칙

### 제31조(공간운영규칙)

공간 운영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본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「공간운영규칙」이라 한다.

### 제32조(발의·의결 요건)

① 각 「공간운영규칙」의 제정·개정·폐지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 발의된다.

1. 중앙운영위원의 발의
2. 공간운영위원장의 발의

② 각 공간운영규칙의 제정·개정·폐지는 중앙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 부 칙

본 세칙은 공포 후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 시행한다.